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시청각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등〉

■ 김 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65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론	4
가. 입법배경: 방송분야 거버넌스 변화 경과	4
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대두	9
다. 시청각미디어 분야 소관의 일원화	13
라. 해외의 방송·통신 관련 기구 현황	21
마. 제정안의 구성체계	23
2. 총칙: 목적 및 운영원칙(제1장)	25
3. 시청각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	30
4.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제3장)	35
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제4장)	40
6.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제5장)	44
7. 부칙	5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 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7. 28.

다. 회 부 일 : 2025.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의 융합과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유료방송 정책이나 방송산업 진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전반의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 환경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의 등장, 미디어 소비방식의 다변화,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융합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전반에 걸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나, 현행 이원화된 체계는 미디어 융합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

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OTT 콘텐츠 등 뉴미디어 정보에 대한 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과 시청각미디어의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 OTT, 디지털 플랫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이용자 보호 등 주요 정책을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함(안 제11조).
- 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존의 ‘승인·등록’ 사항을 ‘승인·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
- 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8조).
- 마. 심의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1. 총 론

가. 입법배경: 방송분야 거버넌스 변화 경과

- 현재 방송부문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이원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방통위는 지상파·라디오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PP 등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및 ICT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방송과 관련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함.
- 주파수 업무 또한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통신용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담하고 있음.
-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주무부처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목적이었음.¹⁾
- 2000년대 IPTV나 DMB 등장 등 신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1) 舊「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 2008.2.2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현으로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되었던 콘텐츠, 네트워크, 단말기 및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이었으나,

- 방송·통신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진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념과 규제논리로 인해 유사한 서비스에 각기 다른 규제체계가 적용되는 **규제 형평성 문제**나 하나의 서비스에 방송과 통신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중복 규제의 문제**,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도입 지연 문제** 등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었으며,
- 이에 따라,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기구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²⁾
- 국회는 2007년 1월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부처·기구 개편방안과 IPTV 도입 관련 법률안 등을 논의했으며, 2008년 2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의 내용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³⁾

2)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07.5.

3) 당시 ‘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 방송과 통신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형태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규제 중심으로 조정하고,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기능분담이 되어, 현행 체계로 이어지고 있음.

- 당시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인수위원회는 기능 개편 원칙으로서 방송통신 분야를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으로 구분하되, 방송통신 융합의 급속한 진전으로 진흥과 규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흥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고,⁴⁾ 미래창조과학부 내 정보통신기술전담차관을 두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하려 하였음.

- 이에 맞춰 이한구의원 등 15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① 통신·전파·네트워크·융합정책, ② 방송진흥정책, ③ 방송매체정책, ④ 이용자 보호정책 중 ▲통신·전파·네트워크·융합정책 전체, ▲방송진흥정책 중 광고정책, 미디어랩허가, 편성정책 등 일부 업무, ▲방송매체정책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1차 발표(2013. 1. 15), 2차 발표(2013. 1. 22)

중 유료방송 허가, 홈쇼핑 승인, 채널구성과 운영 등을 선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이용자 보호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⁵⁾

- 이에 대해서는 방송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고, 여야 정부조직개편 합의⁶⁾에 따라 현재와 같이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허가·재허가하는 경우 등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는 식으로 이원화 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및 미래부 이관 사항 합의내용(2013.3) >

구 분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송통신융합 정책실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통신진흥정책, 융합정책총괄 융합정책, 방송통신녹색기술, 전파정책 기획, 전파방송관리, 주파수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뉴미디어정책 ※비보도·상업PP 등록·승인사항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 통신경쟁정책, 통신이용제도, 통신자원정책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 통신시장조사, 방송시장조사, 이용자보호, 시청자권익증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	네트워크기획, 네트워크정보보호, 인터넷정책, 지능통신망
산하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5)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2.

6) 연합뉴스, “여야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 전문”, 2013.3.17.(<https://www.yna.co.kr/view/AKR20130317063500001>)

- 2013년의 기능분화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방송 관련 이슈에 밀려 상대적으로 ICT와 통신 분야에서의 정책성과가 미흡하고, ICT 관련 정부기능(과거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각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정책의 통합성과 추진력이 떨어져 ICT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음.
- 이에 따라 ICT와의 연관성이 크고, 방송·통신 융합이 보다 진전된 매체라고 볼 수 있는 IPTV나 SO, 위성TV 등의 뉴미디어 관련 사항이 미래부로 이관되었고,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산업성 보다는 공공성의 가치가 보다 중요시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두었다고 볼 수 있음.
-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ICT, 방송부문 주무 부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⁷⁾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ICT, 방송 부문 주무 부처 변화>

개편시기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998년	2008년	2013년
과학기술 부문	과학기술부 (전신: 과학기술처)	교육과학기술부 (전신: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ICT 부문	정보통신부 (전신: 체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전신: 정보통신부 +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방송 부문	방송위원회 (1981년 발족)		

자료: 김수원&김성철, “새 정부의 ICT·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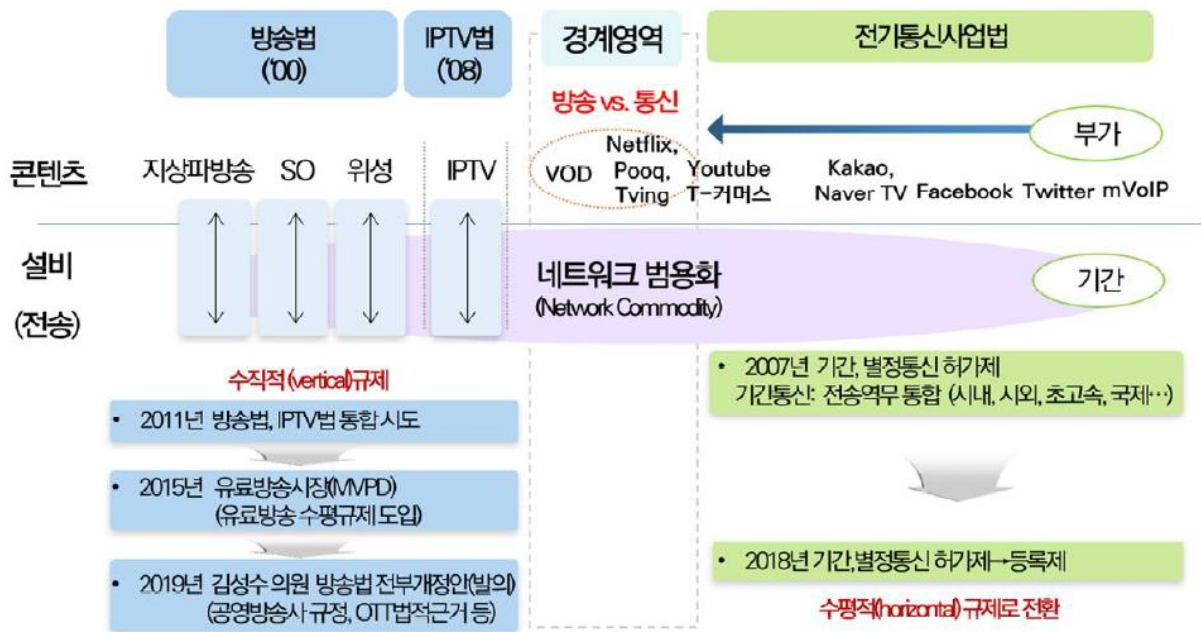
7) 문재인 정부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 역할 분담은 박근혜 정부와 동일, 윤석열 정부 경우에도 역할 및 기능의 변경은 없었음.

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대두

- 방송매체별로 규제체계가 이원화되고 미디어 진흥기구와 규제 기구가 분산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IPTV, OTT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기존의 분리된 규제체계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담론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가령 2003년에서 2004년에는 데이터방송(T-Commerce) 및 DMB, 2007년에서 2008년에는 IPTV, 2013년에는 VOD, 2016년에는 OTT 서비스 등 ‘경계영역’에 존재하는 서비스의 등장은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규범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
- 우리나라는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송망(방송망, 통신망)을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규제와 소관을 차별화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인해 경계영역 서비스를 포함한 방송, 통신 서비스들이 특정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융합환경에서 경계영역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의 방송서비스를 어떠한 기준과 방향에서 분류를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가 관건인 상황임.⁸⁾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현황>



자료: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2020.3.

- 특히 최근 OTT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방송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고함.
- OTT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료방송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OTT 주도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면서 기존 방송사업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

8)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2020.3.

- 2024회계연도 방송사업매출은 IP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CP)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감소하여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고, 지상파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는 10년간 연평균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2015년 대비 2024년 매출이 축소된 역성장을 보임.

< 매체별 방송사업매출 현황('15년~'24년) >

(단위 :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년 대비		연평균 성장률
											증감액	증감률	
지상파	41,007	39,987	36,837	37,965	35,168	35,665	39,882	41,551	37,309	35,308	△2,001	△5.4%	△1.6%
SO	22,590	21,692	21,307	20,898	20,227	19,328	18,542	18,037	17,335	16,835	△500	△2.9%	△3.2%
위성	5,496	5,656	5,754	5,551	5,485	5,328	5,210	5,058	4,920	4,742	△178	△3.6%	△1.6%
IPTV	19,088	24,277	29,251	34,358	38,566	42,836	46,368	48,945	50,072	50,783	711	1.4%	9.7%
PP	62,224	63,801	66,396	68,402	70,849	70,725	75,405	76,268	71,087	71,081	△6	△0.01%	1.5%
CP	2,655	3,482	5,442	5,761	6,311	6,148	8,563	9,230	8,980	9,263	283	3.2%	13.0%
지상파DMB	108	103	114	104	95	76	49	48	31	30	△1	△3.2%	△133%
계	153,168	158,998	165,102	173,039	176,702	180,106	194,019	199,137	189,734	188,042	△1,692	△0.9%	2.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2025.6.

- 방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 정책은 현재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공정위 등 4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다원화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⁹⁾

9)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 한국방송학회&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 2022.3.

<미디어 관련 정부부처 주요 업무>

부처	주요 업무
과기정통부	유료방송/홈쇼핑 인허가, 통신 인허가, 전파 관리, 디지털 미디어 진흥,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방통위	지상파/중편 인허가, 방송편성/다양성, 방송광고, 방송/통신 사후규제, 인터넷/플랫폼 정책, 외주제작, 이용자보호/단말기 유통조사, 디지털 유해정보
문체부	문화산업정책, 광고 진흥, 영상물 심의, 한류지원, 저작권 관리, 게임, 독립제작사 지원, 출판
공정위	유료방송 M&A, 방송/통신 사후규제, 플랫폼 정책, OTT M&A

자료: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 한국방송학회&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 2022.3.

- 이에 제21대 대선 당시 양당의 대선공약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
는기도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1대 대선 양당의 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 및 법제의 통합 개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와 거버넌스 논의 위한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 (가칭)’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	○ OTT와 방송을 아울러 고려하는 방송미디어 법제 개선 - 여론형성 등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방송, 시장영역에서 국내외 경쟁을 하는 방송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송미디어 법제 마련 ○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정비 - 허가 등 규제·심의 및 진흥 등에 대한 소관 기관 명확화, 중복 규제 해소

다. 시청각미디어 분야 소관의 일원화

-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방송이나 통신의 공공성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독임제 기구인 과기정통부가 산업성에 초점을 맞춰 유료방송의 진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 제정안은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와 관련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현행	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매체 - 지상파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보도·종편PP	○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시청각미디어의 종류 - 지상파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보도·종편PP - 위성·종합유선·중계유선 방송사업자 - 홈쇼핑PP, 일반PP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기타사업자 (전송망·음악유산·전광판 방송사업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 과기정통부 소관 방송매체 - 위성·종합유선·중계유선 방송사업자 - 홈쇼핑PP, 일반PP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기타사업자 (전송망·음악유산·전광판 방송사업자)	
○ 방송매체 외 (전기통신사업법, 과기정통부 소관)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 이와 관련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 또는 통합(합의제와 독임제 형태 간 선택 등), 위원회 위원 수 등 여러 사안¹⁰⁾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동 제정안과 함께 최민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동 제정안과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구 분	최민회 의원안	김 현 의원안
입법형식	일부 개정	현행법 폐지 후 제정
주관기구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현행과 같음)	시청각미디어위원회, 합의제
위원구성	위원수 9인으로 확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1, 비상임 6)	5인 상임 (현행과 같음)
주요기능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시청각미디어 규제 및 진흥, 통신 규제 ※OTT 명시적으로 포함
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행과 같음)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무직공무원, 인사청문회대상

- 최근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에서 미디어 기구개편 관련,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산하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2025년 5월과 7월에는 미디어 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

10) 나아가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은 향후 전통매체와 신규매체 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서비스-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 등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미디어·ICT 통합 독립제부처(정보미디어부)’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산업영역과 공적영역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기능분리형 모델(독임제 부처+합의제 기구)과 통합형 합의제 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논의되는 안은 방송과 통신 또는 미디어 등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보임.

- 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의 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통합론’과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규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론’이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독임제적 또는 합의제적 요소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지의 논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¹¹⁾

- 일반적으로 독임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사무의 통일성·신속성·융통성·기밀성 확보의 장점이 있고, 합의제는 현안에 대

11) 이전 조직개편 당시 국회 제출안의 입법취지 및 검토보고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에는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인 법제와 행정기구로 인한 문제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합한 규제체계의 정립 필요성 등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되었고 기존의 정보통신부가 소관하던 ICT 진흥 등과 관련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독임제 기관으로 수평이동 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2013년 방통위 개편 당시에는 방송 관련 이슈에 밀려 상대적으로 ICT와 통신 분야에서의 정책성과가 미흡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료방송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규제와 진흥의 분리를 우선시했던 것으로 보임.

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하고, 참여를 통한 민주성·투명성·공정성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의 추진력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흥 쪽을 담당하는 독임제 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합의제 기구로 인해 방송·통신 발전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거나 논리적 비일관성을 내포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그러한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부 조직형태로 귀결짓는 것은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¹²⁾

- 생각건대, ‘규제와 진흥’ 또는 ‘공공성과 산업성’의 분리라는 이분법적 틀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지금까지의 역사적 배경 등 현실적인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동 제정안에 따라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여 “시청각미디어”를 소관으로 하는 통합기구가 출범할 경우 동 기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12) 현행 방통위는 형식상 합의제 기구지만 위원 수가 비교적 소수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 독임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다음과 같은 후속 정비를 진행 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정안은 조직의 설치 및 대략적인 소관 사무만 규정할 뿐 실제적인 규제와 진흥 등의 사항은 담고 있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맞춰서 기존의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방송 관련 법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칭)시청각미디어법’이나 ‘통합 방송법’ 등의 제정이 필요할 것임.¹³⁾
- 모든 시청각미디어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규제의 완화나 규제 수준 등 규제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특히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OTT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국내 OTT사업자나 유료방송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OTT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국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와 진흥 수준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추가로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과 사용처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OTT사업자 등을 기금 분담대상에 포함시킬지, 그렇다면 어떤 기

13) 이와 관련해 중복규제나 소관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소관사항이나 관련 법률 정비사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준으로 징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와 심의사항 등만을 변경하고 있는데, 현재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 규정된 권한 사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등 소관 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제정안과 관련한 정부 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함하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상임위원이 한 명인 상황에서 공식의견을 낼 수는 없으나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분야와 관련해, 방송미디어시장은 OTT의 확산 등 글로벌 경쟁환경이 심화되면서 당면한 현안 해결과 AI·디지털과의 융합 등 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통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행 방통위 사무 범위를 넘어 새로 또는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사무 등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소관 사무와 충돌·중복 소지가 있는바, 현 방통위법에 규정된 현재 방통위의 운영원칙, 소관사무, 심의·의결사항에 준하여 소

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되는 등 방송과는 제도적 기반이 상이한 별도사업으로, “시청각미디어”를 “방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문체부는 방송영상을 포함한 콘텐츠 전 분야에 대한 총괄 및 진흥사무를 관장하는 상황으로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방송의 진흥”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OTT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콘텐츠 업계 전반의 진흥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전통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일관된 정책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청각미디어 개념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및 획일적 규제에 따라 업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규제의 태양에 따라 통상 규범위반¹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¹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하여 9인의 심의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한 다음, 심의위원이 상임위원 3인을 호선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심의위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일반적이지 않고, 심의를 민간독립기구로 설치한 근본취지에 반하며, 위헌성¹⁶⁾ 문

14) 해당 사안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심의의 경우 범주와 개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규제자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OTT 플랫폼과 같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기존 전통 미디어 규제에 포섭하는 것은 그 규제의 태양에 따라 통상 규범 위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SEVICES BARRIERS

Audiovisual Services

Notwithstanding KORUS commitments not to impose new restrictions, multiple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discussing ways to incorporate online media streaming platforms into the existing restrictiv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cy media, including potential Korean content requirements for U.S. over-the-top platforms.

-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 中

- 한미 FTA에 따라 OTT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할 수 없음
- ※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서비스는 자유화를 전제로 하되,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명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한미 FTA 제12.6.1조(현재유보) 및 부속서I에는 기간통신서비스 및 방송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OTT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음
 - 한미 FTA 제12.6.2조(미래유보) 및 부속서II에는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본 제정안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심의 강화를 포함한 규제 강화까지 허용하고 있지는 않음
- 본 제정안에 따른 조직 개편 및 OTT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그 규제의 태양에 따라 한미 FTA 제12.2조(내국민대우), 제12.3조(최혜국대우), 제12.4조(시장접근) 및 제12.5조(현지주재) 위반 가능성이 있음

15) 제정안에서 OTT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추가하여 규제하거나 심의하는 부분은 미국과의 FTA,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 내용과 상충 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 제정안은 조직법적 성격의 법률로 인허가 요건, 관련 규제나 심의 등은 다른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고, 한미FTA나 USTR에서 우려하는 무역장벽 등의 문제는 다른 법령 등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됨. 현재도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등은 「방송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음.

16)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결정례는 다음과 같음.

-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였음(헌법재판소 1998. 12. 24. 96헌가23).

라. 해외의 방송·통신 관련 기구 현황¹⁷⁾

- 해외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기능을 단일기구에서 담당하나,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정책과 규제기능을 분리하여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각각 분담하는 등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193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방송(라디오, TV), 통신(유무선, 위성 등) 그리고 일부 인터넷 관련 규제까지 단일기구로 총괄하고 있으며, 독립합의제 위원회로 운영됨.
- 일본은 총무성이 방송과 통신정책 및 규제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OTT 등 신규 서비스의 경우에는 법령 미비 등으로 명확한 규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총무성이 총괄관리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영국은 방송통신 정책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와 커뮤니케이션청(Ofcom)이 분담하며, DCMS는 주로 정책결정과 산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Ofcom은 주로 규제기능(라이선스, 시장경쟁, 콘텐츠 심의 등)을 담당함.

17) 「방송통신 거버넌스 체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 2018.12.),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핵심 정책의제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 2019.12.)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캐나다는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라는 연방규제기구가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정책기능은 정부부처가 관장하는 분리운영체계임.

<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 >

유형	국가	정책/진흥기관	규제기관
기능통합형	미국 (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FCC)	
	일본 (독임제)	총무성	
기능분리형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 통신·예술부(DITRDCSA)	통신미디어청(ACMA)
	이탈리아	기업·제조산업부 (MIMIT)	통신규제위원회 (AGCOM)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통신청(Ofcom)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 문화유산부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 (CRTC)

마. 제정안의 구성체계

- 동 제정안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형식으로,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전반적인 편제는 유사하나, 조항의 주요 내용 등에 있어서 변화를 주었음.
- 현행 법률과 동 제정안의 구성체계 비교 및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존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대신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은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표명한다고 보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변경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운영원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운영원칙)	-목적(제1조)에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명시 -운영원칙(제2조)에 “규제와 진흥의 균형”, “민주적 통제” 등을 추가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임명 등) 제6조(위원장)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신분보장 등) 제9조(겸직금지 등) 제10조(결격사유)	제2장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임명 등) 제6조(위원장)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신분보장 등) 제9조(겸직금지 등) 제10조(결격사유)	-위원회 명칭 변경 외 구조 등은 동일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소관사무(제11조)에 방송진흥 업무와 OTT진흥·규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의·의결사항(제12조)을 이에 맞게 구체화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변경사항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6조(연차 보고서) 제17조(사무조직)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6조(연차 보고서) 제17조(사무조직)	-회의 개의정족수(3인 이상),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 등 변경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2조(회의 등)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제25조(제재 조치 등) 제26조(사무처)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제28조(예산) 제29조(심의위원회 규칙) 제30조(과태료)	제5장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심의위원장)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3조(회의 등)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제26조(제재 조치 등) 제27조(사무처)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제29조(예산)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제31조(과태료)	-심의위원장(제19조) 관련 조항 을 신설하여, 인사청문, 탄핵 소추 등 명시 -OTT 심의직무 및 관련 심의 규정 제정의무 등 추가(제22 조, 제25조)

○ 이하에서는 현행 법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위주로 개별조항
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음.

2. 총칙: 목적 및 운영원칙(제1장)

- 제정안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목적(제1조) 규정과 운영원칙(제2조)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항들을 추가 및 구체화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시청각미디어(이하 “시청각미디어”라 한다)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해 시청각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②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③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 미디어와 통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방송의 ‘규제’와 ‘진흥’의 기능통합, ‘OTT’의 소관 규정 등을 단순히 소관 사무 조항 등에만 추가된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제1조)과 운영원칙(제2조)부터 반영되어 법률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임.

○ 보다 구체적으로 제1조 목적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 현행법은 주로 “방송”에 관련하여 그 목적 범위를 규정하나, 제정안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¹⁸⁾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를 “시청각미디어”로 규정하였고, 법률의 적용범위를 뉴미디어까지 명확히 확장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외에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 보장” 등을 핵심 목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요해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위원회 운영 목표로는 기존의 “독립적 운영”에 더해 “책임있는 운영”을 강조하고,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규제 뿐 아니라 산업 발전을 이끌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함.

○ 제2조 운영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 현행법이 3개 항목으로 선언적인 원칙을 제시한 데 비해, 법률안은 5개 항목으로 늘리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음.
- 이용자 권익과 관련하여 “정보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명시하

18)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여 정보격차 해소노력을 의무화하였고(제1항),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 보장의무를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업무에서 이를 우선하도록 함(제2항).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원칙을 신설하고(제3항), 규제와 진흥 정책의 조화를 명시하였으며(제4항),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유지와 함께 민주적 책임성 원칙을 명시함(제5항).

○ 제정안 제1장 총칙은 현행법보다 규율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보호해야 할 가치를 구체화하고 위원회에 부여된 정책목표 및 운영책임 등을 강화하고자 함. 이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기관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의 핵심 입법취지를 반영한 결과로 보임.

○ 동 부분과 관련된 부처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상 “시청각미디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에 포함되는 미디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방송”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⁹⁾

19) 방통위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 <u>온라인 동영상 서비스</u> 등 -----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u>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말한다</u>)·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u>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u>)·온라인 동영상 미디어(<u>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를 말한다</u>) 등 -----

- 과기정통부는 제2조(운영원칙) 관련해 현재 통신산업 진흥정책과 사전규제는 기민·신속한 의사결정 및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독립제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합의제적 결정이 필요한 사후규제 영역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현행 방통위법 상 방통위의 통신 관련 소관범위를 넘어 제4항에 “진흥 정책”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과기정통부 소관업무와 충돌·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문체부는 법안명을 포함해 법안 전문에 사용된 “시청각미디어”를 일괄하여 “방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시청각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

- 제정안 제2장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
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청각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7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
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제정안 제2장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법 제2장의 전반적인 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위원회의 설치목적(제3조제1항)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했으나,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여 범위를 넓게 규정함.
 -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청각미디어’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업무”라고 규정한 반면, ‘통신’에 대해서는 “규제”라고 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에 대해서는 진흥과 규제, 통신에 대해서는 규제를 주된 소관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 외 조항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 제3조제2항은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되,²⁰⁾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²¹⁾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률은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등 각종 위원회의

20)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1)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심의·의결 사항을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서 제외하며, 제정 안도 관련된 사항을 행정감독권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새롭게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 분쟁조정, 시정 요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제12조제29호)”은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이 배제되는 업무에 “제12조제29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 결격사유(제10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가 아니라 “방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0조에서 “방송”은 “시청각미디어”로 용어를 변경하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종사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제3장)

- 제정안 제3장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나 심의의 결사항 등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현행법률 상 방통위의 소관사무를 계승하면서도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진흥 및 규제 등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구체화함.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청각미디어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소에 관한 사항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변경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승인·변경승인·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4.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5.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7.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20.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2.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4. 방송·통신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6.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7.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편성·판매·유통 및 전송 등에 관한 사항
28.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9.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 분쟁조정, 시정요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30.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1.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3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제11조제1항의 위원회 소관사무를 현행법률과 비교해보면,

- 제1호는 방송 분야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등을 포함하고 방송산업 진흥업무를 규정하여 방송분야 정책기능을 일원화하였음.
- 제2호는 통신 분야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법률과 동일하게 통신 분야의 진흥 등의 기능은 과기정통부에 남겨두고,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음.
- 제4호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OTT 관한 업무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함.

○ 제12조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현행법률과 비교하면,

- 과기정통부와 분담하던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등 관련된 사항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모두 담당하도록 규정함.

- 제29호에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 분쟁 조정, 시정요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으로 추가하여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 등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동 부분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동 법 제22조제1항²²⁾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등록제’를 규정함.
 - 제정안 제12조제29호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 분쟁조정, 시정요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데, 이에 대해 문체부는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사실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에 해당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등록”을 “신고수리·등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동 부분과 관련된 관계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2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는 현재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통신 관련 소관사무와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 범위를 넘어 제11조를 통해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라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추가 제시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와 충돌 또는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12조제29호에 대해서도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등록, 요금신고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2조의4 등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사무이고, 분쟁조정이나 시정요구 등은 제정안 제12조각호에서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문체부는 방송영상을 포함한 영상콘텐츠 관련 사무를 문체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방송의 진흥,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및 전송에 관한 사항,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제4장)

- 제정안 제4장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실제 작동 방식을 규정하는 부분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은 현행 법률과 상당 부분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나, 제13조 회의규정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음.
 - 현행법률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정안은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법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데, 제정안은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방통위는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YTN 최다출자자 변경,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등 주요 안건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적·정치적 문제 지적이 지속된바 있음.
- 제정안은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2인체제에서의 심의·의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방통위의 의사·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음.

- 먼저 의사정족수 4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발의, 의안번호 2200461)」이 2024년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과 부결(2024.9.26.)된 바 있음.
- 다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한 내용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5)」를 2025년 1월 의결한 바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과 부결(2025.4.17.)된 바 있음.
- 당시 대통령 재의요구서(2025.3.18.)는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사유였음.

6.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제5장)

- 제정안 제5장에서 현행법률과 주요하게 달라진 부분은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으로, ①심의대상의 확대와 ②심의위원장의 위상 및 책임성 강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변경하였음.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청각미디어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들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의 건전성 관련 심의
6.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3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제22조제5호를 심의하기 위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관한 심의규정

제26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5조의 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시청각미디어·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9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심의대상의 확대와 관련해, 제정안은 제22조제5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건전성 관련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제25조제3호에서 관련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기존의 방송심의뿐 아니라 OTT 콘텐츠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 보호 등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송과 OTT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건전성”이라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현재 개인 콘텐츠가 아닌 OTT를 통해 전송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시청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등급분류의 성격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건전성 심의는 기존 등급분류 제도 외에 새로운 차원의 규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 이에 대해 규제 중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콘텐츠 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국 등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제기됨(한국인터넷기업협회, 문체부).
- 또한, 현재 방심위의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 건전성 등 관련된 근거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심의를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향후 시청각미디어에 전반에 대한 규제 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심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범주와 개념이 혼용되어 있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과 규제자·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고, 심의규정 위반시 어떤 법률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불명확하는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심의기준, 규제방법, 규제절차,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이 전반적으로 모호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제정안은 제18조제5항을 통해 심의위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며, 제19조를 신설하여 탄핵소추의 근거를 두고 있음.

- 인사청문 관련해서는,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²³⁾과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²⁴⁾

23)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24) 「인사청문회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공직 후보자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의 후보자가 규정되어 있는 등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상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장 업무의 중요성이 크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방심위의 사례와 같이 방통위 회계감사 등을 통해 방심위원장에 대한 해촉 등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졌고, 민주적 통제 수단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전에 방심위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안(2201751), 김현의원안(2201836), 김우영의원안(2202749))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민간기관에 정무직공무원을 보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 한편, 제정안 제20조제1항제1호는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심의위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결격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²⁵⁾
- 참고로, 우리 위원회가 2024년 12월 13일 의결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심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및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한 다음, 심의위원이 상임위원 3인을 호선한 후 대통령이 심의위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일반적이지 않고, 이는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치한 근본취지에 반하며 위헌성 문제²⁶⁾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나 궁극적으로 행정권에 의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5)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만, 교육공무원·「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6)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결정례는 다음과 같음.

-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였음(헌법재판소 1998. 12. 24. 96헌가23).

7.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822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무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승계사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허가·승인·동의·인가 그 밖의 행위와 각종 신고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이 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㉔ (생략)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현행 법률을 폐지하고 방통위 및 방심위의 모든 업무, 권한, 재산, 직원 등을 새로운 기구가 중단 없이 이어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하고, 제5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승계를 규정함.²⁷⁾

- 부칙 제3조제2항은 방통위 승계사무와 관련해 종전 규정에 따라 방통위가 행한 허가·승인 등의 행위와 신고 등 방통위에 대한 행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방심위가 기존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²⁸⁾

27) 부칙 제4조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한 명인 상황에서 공식의견을 낼 수는 없으나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28) 이 경우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허가·승인·동의·인가 그 밖의 행위와 각종 신고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

- 제정안의 부칙은 제6조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정하는 38개 법률에 대해 일괄적으로 그 용어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있고, 제7조를 통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용어만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사항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있지는 않음. 한편,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중 누락,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소위심의 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대신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방통위나 방심위,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을 인용하고 있지만 제6조를 통해 개정되지 않고 누락되는 법률 등에 대해서, 이를 각각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장,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으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해, 실질적 변경효과를 가지도록 보충하고 있음.²⁹⁾

문 의 처

02)6788-5226

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하거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9) 단, 실제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의 내용을 지시된 대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떤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적용되는 것인지 명백히 알기 어려워 해석상 혼란이나 법률 이해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음.